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HACCP 인증 유효기간 확대〉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191호)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19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개정안의 내용	3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191호)	3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192호)	5
III . 검토의견	7

I. 개요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19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4.
- (3) 회 부 일 : 2024. 7.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219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4.
- (3) 회 부 일 : 2024. 7.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Ⅱ. 개정안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호)

□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제48조제8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 등임(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u>3년</u>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 ----- ----- <u>4년</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u>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③ ----- ----- <u>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8조제8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리령으</u>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u>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 ----- - <u>업소에 대하여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u>. ②·③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는 경우부터 적용함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92호)

□ 개정안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 ----- ----- 4 년-----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u>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u>	③ ----- ----- -- <u>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u> -----

	--. <후단 삭제>
--	-------------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
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부터 적용함

Ⅲ. 검토의견

□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의 개정안은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¹⁾,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²⁾에 대하여

①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②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요건에 현행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인증 유효기간	최초	3년	4년
	연장	3년 이내	4년 이내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좌동) ②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추가)

1) 「식품위생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한 영업자의 업소를 말함.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말함,

□ 식약처장은 식품별 제조·공정 과정과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등 과정에서의 위생·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 제도(HACCP)를 「식품위생법」³⁾과 「축산물 위생관리법」⁴⁾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서는 인증제도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연장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로 하되, 인증 또는 인증연장 신청 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 및 인증연장 여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⁵⁾⁶⁾.

3)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제11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등)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 또는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별표 4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며, 평가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거 및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최초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에 따른 심사에 더하여 인증받은 업소(이하 “인증업소”라 함)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여⁷⁾, 이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또는 개선명령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음⁸⁾.

□ 개정안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기적인 사후 점검에 따른 조사·평가의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인증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연장 심사에 따른 서류준비 및 수수료⁹⁾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자 스스로 우수한 영업장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7) 「식품위생법」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8)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제17조(조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명할 수 있다.

9) 수수료: 식품 품목당 20만원/축산물 규모별 34~90만원

＜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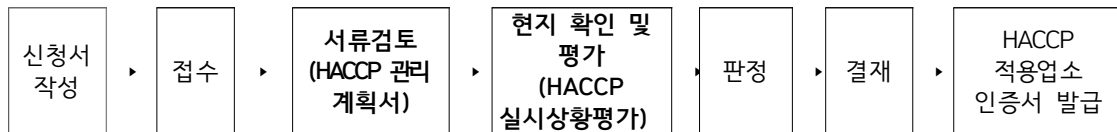
○ **(신청 기한)** 신청인이 인증 유효기간 도래 60일 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

○ **(절차)** 처리기한 40일(수수료: 식품 품목당 20만원/축산물 규모별 34~90만원)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후 적합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4] 업종별 HACCP실시상황평가표



구분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조치사항	
적합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85% 이상	
보완	보완(필수 항목 ¹⁾ 감점)	(인증원→업체) 개선사항 통보 (업체→인증원) 조치 완료 보고 (인증원) 현장 확인
	보완(85%미만~70% 이상)	(인증원→업체) 개선사항 통보 (업체→인증원) 조치 완료 보고 (인증원) 서류 및 현장 확인
부적합	부적합(70% 미만)	(인증원→업체) 개선사항 통보 심사 종결
	부적합(주요안전조항(배점 0점))	(인증원→업체) 개선사항 통보 심사 종결

주: 1) 위해요소분석 미실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미실시, 작업장 세척 및 종사자 위생관리, 지하수 살균 미실시, 검사성적서 미구비

자료: 식약처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유효기간을 짧게 정할수록 잦은 심사를 통해 인증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증업소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필요시 임의의 출입·검사 등 행정조사가 가능¹⁰⁾

10)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한 점, HACCP 의무적용대상 업종 확대에 따른 한정된 조사·평가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도 2023년 6월 법정 인증 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인증 유효기간 4년 확대를 권고한 바가 있음.

- 최근 6년간 HACCP 인증업체 수는 단계적인 의무적용대상 업종 확대에 따라 2019년 11,549개소에서 2024년 9월 말 기준 20,686개소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식육가공업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까지,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서는 2029년 1월까지의 모든 업체에 대하여 의무적용이 확대될 예정임.

< 최근 6년간 HACCP 인증업체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 9월
전체	11,549	13,994	16,743	18,606	19,739	20,686
식품	6,566	7,685	9,251	10,356	10,741	11,106
축산물	4,983	6,309	7,492	8,250	8,998	9,580

자료: 식약처

-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추가) 한편, 개정안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추가하고 있음.

- 현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적용업소의 인증 또는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별표 4의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95%) 이상인 경우¹¹⁾ 안전관리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 그런데, 현행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제1항¹²⁾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 여부를 별표 4에 따라 연 1회 이상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정기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11) 2023년도 기준 정기적인 사후 점검 결과가 95% 이상인 업체 수는 전체 현장 평가 대상업체 수의 23.2% (식품 1.4%, 축산물가공 11.8%, 축산물유통 23.2%, 축산물농장 55.2%)에 달함

1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를 별표4에 따라 연 1회 이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연도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의 방법으로 정기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주요안전조항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 수거 및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선행요건 중 회수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5항¹³⁾에서는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2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95%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인증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최대 3년간 현장조사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3년 전 정기 조사·평가 점수로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요건 추가와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202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업체가 2025년 정기 조사·평가에서 95%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2년간(2026~2027년) 현장조사가 면제되고 2028년 인증 유효기간 도래 시 3년 전인 2025년 정기조사·평가 점수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연장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그 연장심사 결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미만이거나 부적합한 경우 자체적인 조사·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2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다만, 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비가열식품은 제외한다.

2.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90%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다만, 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비가열식품은 제외한다.

3.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실시

4.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이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5.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 개정안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

[현행]	[개선]
(모든 업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 연장 신청(수수료 납부) [식품] 품목당 20만원 [축산물] 업종별, 규모별 34~90만원 (인증원) 서류검토, 현장조사로 판정	(일반 업체) 좌동 (인증원) 서류검토, 현장조사로 판정 (우수 업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 연장 신청(수수료 면제) (인증원) 서류검토로만 판정 (현장 심사 면제)

< 개정안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요건 추가 예시 >

연도	현행(인증유효기간 3년)	개정(인증유효기간 4년)
2024년	최초인증	최초인증
2025년	정기 조사·평가 (95% 이상)	정기 조사·평가(현장평가, 95% 이상)
2026년	정기 조사·평가(서류검토, 현장면제)	정기 조사·평가(서류검토, 현장면제)
2027년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서류검토, 현장평가)	정기 조사·평가(서류검토, 현장면제)
2028년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서류검토, 현장면제)

자료: 식약처

< 최근 5년간 정기 조사·평가 결과 >

(단위: 개소)

구 분	현장평가 평가점수의 백분율	2020	2021	2022	2023	2024. 8월말
식 품	95% 이상	85	145	78	45	9
	90%~95%	555	603	715	705	233
	85%~90%	1776	2212	2568	2447	1022
	70%~85%	200	299	329	261	95
	70% 미만	7	44	72	60	41
축 산 물	95% 이상	315	233	756	490	191
	90%~95%	750	551	1,283	1,203	519
	85%~90%	976	712	1,147	1,321	640
	70%~85%	150	158	203	279	182
	70% 미만	28	20	37	30	23

자료: 식약처

문 의 처
02)6788-5493